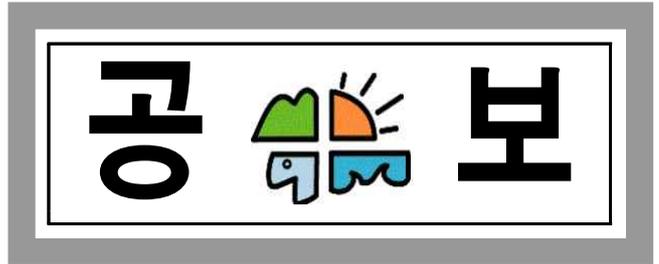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493호 2023년 10월 06일(금)

고 시

- 하천점용허가 고시 2

입법예고

-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6

발행 : 시 민 소 통 담 당 관 (전화 : 639-3750, FAX : 639-2799)

●속초시 고시 제2023-138호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0월 6일

속초시장

1. 하천의 명칭	쌍천	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	성 명	속초시장(미래전략과)
	주 소	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
3. 점용의 목적 및 개요	목 적	수변공원 조성(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)
	개 요	설악동 화채마을 수변공원 조성사업
4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	위 치	속초시 설악동 산57-6, 설악동 산57-7
	면 적	2,237㎡
5. 점용허가의 유효기간	2023. 10. 4.~2027. 12. 31.	

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

「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재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3년 10월 06일

속 초 시 장

1. 제정이유

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른 속초시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추진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호)
- 나.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(안 제4조)
- 라. 영양관리사업 추진(안 제5조)
- 마. 교육 및 조사(안 제6조~제7조)

3. 자치법규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가. 해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. 10. 26.(목)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건강증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성 또는 반대 여부 및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

나.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

- 1) 주 소 : 우)24855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36
속초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
- 2) 연 락 처 : 전화(033-639-2198), 팩스(033-632-5751)
- 3) 전자문서 : keh1361@korea.kr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문서, 직접방문 등

5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(033-639-2198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민영양관리법」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국민영양관리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속초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.

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.

제4조(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)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
2.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
3.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
4.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.

제5조(영양관리사업)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영유아, 임산부, 아동, 청소년, 성인,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
2.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
3.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영양·식생활 교육)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·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.

제7조(영양·식생활 조사)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